

현	행	개	정	안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3. (	"	)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4. (	"	)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신설)		5. (	"	)
		6.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

제안년월일 : 1992. 9.

제안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증설과 관련한 전문 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 보강으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함.

□ 주요골자

○ 기구증설-의정계

○ 인력보강-6명

- 행정·별정6급 : 2명(전문위원)
- 행정6급 : 1명(의정계장)
- 행정7급 : 1명(의 정 계)
- 행정8급 : 1명(의 정 계)
- 기능9등급(필기) : 1명(의사계 기록 요원)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조 직). 제3항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중 “17명”을 “2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현	행	개	정
제 2 조(조직)	제 3 항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문다.	제 2 조(조직)	제 3 항 ~위하여 “의정계, 의 사계 및 전문위원”을 문다.
제 3 (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